



화협상담실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보험상담

문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어떠한 곳이며 공동주택은 반드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답 :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의거 설립되어 동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점검과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자로서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리고 가구수 10이상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법 제5조(보험가입의무)에 의거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저희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으시고 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 한국소비자연맹, 응답자 : 보험1부)

문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의 법적근거와 판매상의 거래처인 가스사용 신고자중 보험가입 의무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1.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33조(보험가입)에 의거 사업자등(가스의제조·저장·운반·판매·가스용기·용품 제조등)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중 보험가입 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자를 말합니다.

가. 병원,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또는 여관을 경영하는자.

나. 제1종 보호시설에서 수용능력이 50인 이상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 주점영업, 과자영업, 다방영업, 또는 휴게실 영업을 경영하는자.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자. (질의자 : 강남가스상사, 응답자 : 보험1부)

문 : 연건평 250평(3층) 내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가스 사용자로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대상여부와 제1종보호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1. 귀하가 경영하는 다방은, 제1종 보호시설의 그밖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제1종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가. 학교,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사설강습소, 병원(의원을 포함한다).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과 그밖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나. 극장, 교회, 공회당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질의자 : 가스사용자(다방), 응답자 : 보험1부)

문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의 대인·대물의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답 : 1. 대인사고의 경우(인원제한 없음)

① 사망시 : 피해자 1인당 500만원(정액)

② 부상시 : 부상정도에 따라 20만원~400만원까지

2. 대물사고의 경우

①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이 있는 실제손해액

② 1사고당 5.000만원이상 보험가입의무. 다만 2억 원까지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항과 ②항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방재상담

▣ : 층별 방화구획대상인 건물의 설비용 닥트가 각 층을 관통하는 경우에 닥트가 층별 방화구획대상인지 알려 주십시오.

▣ : 관계 건축법규에 의하면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균접한 부분의 규정에 의한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닥트가 노출된 경우에는 층간 슬라브 관통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샤프트내부에 닥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샤프트벽체를 방화구획하므로써 가능합니다. <질의자 : 신송빌딩, 응답자 : 점검2부>

▣ : 통로부분에 자동방화샷다를 설치할 경우, 주의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자동방화샷다는 설치후 그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이 갑종방화문에 준해야 합니다. 또한 자·수동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규격에 적합한 쪽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의자 : 동대문 종합시장, 응답자 : 점검2부>

▣ : 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옥내 및 옥외의 직통계단에 적용되는 피난계단은 건물의 용도, 규모 및 층수에 규제를 받으며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단은 내화구조로 피난층 혹은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계단실은 타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나. 계단실내의 내장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개구부 혹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단 혹은 계단에 면하는 개구부등은 1제곱미터 이하의 망입유리 불박이창을 제외한 타 개구부등과 2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라. 출입구를 제외한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등은 1제곱미터 이하의 망입유리 불박이창으로 하여야 한다.

마. 옥내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하며 옥외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출입문은 자동폐쇄식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이어야 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한다.

사. 기타 직통계단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자 : 이스턴 호텔 외 다수, 응답자 : 점검2부>

▣ : '80년도 허가 건물로써 11층이상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감지기설치 대상여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 표시온도가 섭씨 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 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제반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경우에는 설비의 유효범위내의 부분에는 감지기설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의 용도별 방화구획에서 내부에 위치한 기사대기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 주차장 내의 기사대기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써 경우에 따라 방화구획설치가 완화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구획설치하여야 합니다(질의자 : 한일개발, 응답자 : 점검2부)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외벽판과 슬라브와의 틈서리 구획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틈서리에는 외벽판과 슬라브와의 연결부가 위치하게 되며 불연재 및 내화 충전재를 사용하여 본 구조에 준하는 내화도 및 방화성능이 유지되도록 충전함으로써 구획이 가능합니다. <질의자 : 한일개발, 응답자 : 점검2부>

▣ : 시장·아파트 건물의 초기 소화기 소요단위 산출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시장 및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서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화능력단위 1단위이상으로 환산된 적응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부속용도에는 별도의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속용도는 규모에 규제를 받으나 대체로 보일러실 또는 건조실 등과 화기취급소와 발전실 또는 변전실 등의 전기관련시설이 있는 장소 및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가연물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등으로 대별되며, 이산화탄소 또는 대부분의 할로겐화물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및 2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 또는 사무실등에는 설치할 수 없읍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되어 보행거리 및 설치높이 등을 감안하여 소화활동상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소화기는 적응 긴이소화용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적응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유효범위내의 소화기 설치수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내장재가 불연재료, 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일 경우에는 소화능력단위 산출시의 기준면적이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질의자 : 대신시장아파트, 응답자 : 점검2부>